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가단260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김재인, 정우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8. 3.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3,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8차전105541), 위 법원은 2018. 2. 1. ‘C는 원고에게 13,974,036원과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5. 7.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의한 양수금 원리금액은 2021. 2. 5. 현재 55,068,870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이 2018. 3. 9.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법정상속분 3/5), 자녀인 C(법정상속분 각 2/5)가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4. 5. 접수 제69294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C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지분을 D으로부터 유증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소정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바, 갑 제5, 6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유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19. 2. 12.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0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은 43,200,000원($=108,000,000\text{원} \times 2/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그런데 위 가액은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43,200,000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43,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7.2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310㎡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10분의 21.728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소유)

끝.